

자동차 사용계약서

자동차 소유업체 ○○주식회사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와 자동차 이용업체 ○○주식회사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는 아래와 같이 자동차 사용계약을 체결한다.

제 1 조 【 목 적 】

본 계약은 "갑"의 부재 기간동안 "갑"의 자동차를 "을"에게 부재 종료 시까지 임시 사용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【 사용기간 】

1. "을"은 본 계약 체결이후부터 "갑"의 부재종료 시까지 "갑"의 자동차를 사용하기로 한다.
2. 제1항의 자동차는 ○○주식회사제품으로 ○○모델로서 연식은 ○년식이다.

제 3 조 【 무상사용 】

1. "을"은 본 자동차를 사용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며 무상사용 기간 동안 자동차에 발생한 통상적인 수리의 의무를 부담한다.
2. 제1항의 통상의 수리의무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"을"이 부담하며 "을"은 수리를 고의로 하지 않아서 동 사용 물건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사태를 방지하여야 한다.
3. 본 조의 경우 수리의 비용이 일금_____원정 (₩_____)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은 "갑"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.

제 4 조 【 보험 등 】

"을"은 자동차 면허를 보유하여 운전에 하자가 없어야 하며 자동차 보험에 종합보험 가입을 하여야 하며 가입증서 사본을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한다. 단, 종합보험의 구체적 항목은 "갑"이 지정한다.

제 5 조 【 권리침해 금지 】

1. "을"은 자동차를 보유하는 동안 "을"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, 압류 기타 처분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시 "갑"에게 통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통지함과 아울러 당해 처분집행자에게 적극적으로 동 자동차의 소유자가 "갑"임을 입증 및 항변하여야 한다.
2. 제1항의 경우 제3자의 불법행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불법행위의 경우 "을"은 "갑"을 대위하여 적극적으로 재산의 보존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손해의 발생에 대해 손해배상의 대위청구를 할 수 있다.

제 6 조 【 사용 등 】

1. "을"이 본 계약 이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"갑"에게 이를 통지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손해에 대해 "을"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.
2. "을"은 본 자동차를 승용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화물 운반 등 자동차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이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 7 조 【 선관의무 】

1. "을"은 본 계약에 따른 자동차의 사용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화재 및 분실 등의 사태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. 다만,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2. "을"은 임대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각, 양도, 대여할 수 없으며 위반한 경우 그로인하

여 발생한 모든 사태에 책임이 있다.

제 8 조 【분쟁해결】

1.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원칙적으로 "갑"과 "을"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.
2.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"갑"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.

제 9 조 【특약사항】

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,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.

- 1.
- 2.
- 3.

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, 서명 날인 후 "갑"과 "을"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계약일자 : 20 년 월 일

(갑) 주 소 :
회 사 명 :
대 표 자 : ○ ○ ○ (인)
연 락 처 :

(을) 주 소 :
회 사 명 :
대 표 자 : ○ ○ ○ (인)
연 락 처 :